

# 定 款

재단법인 순석장학재단

# **재단법인 순석장학재단 정관**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취지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사업과 종합적인 기초 학술연구의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순석장학재단이라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둔다.

###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장학금, 학자금의 지원
- 2) 소년, 소녀 가장돕기
- 3) 교육 학술 연구기관 연구비보조
- 4)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 1) 이 법인의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 2)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제2장 재산과 회계

### 제6조(재산의 구분)

-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중 적립
-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 제7조(재산의 관리)

- 1)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에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감정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10조(회계구분)**

-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의 구분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2조의 2(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 1)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 **제12조의 3(기부금 공개)**

이 법인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하고 사무원에게 수당 지급을 할 수 있다.

###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기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3장 임 원**

###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5인

2. 감사 2인

2)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제17조(상임이사)**

-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2) 상임이사의 업무 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 **제18조(임원의 임기)**

-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 **제19조(임원의 선임 방법)**

-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1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 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2)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자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 **제4장 이 사 회**

####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임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여하는 사항

#### **제26조(의결 정족수)**

-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 2) 이사회의 이사는 재직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 3)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제27조(의결 제척 사유)

- .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授受)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 제29조(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31조(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이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5장 부칙

###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을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4조(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를 거쳐 서울특별시 교육청 귀속된다.

### 제35조(시행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제36조(공고 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된 사항
3. 기타 공익법인의 관례 사항

### 제37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 목록 3과 같다.

[부 칙]

1. (시행일)이 정관은 2004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시행일)이 정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지 1”

### 설립 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 1. 기본재산 총괄표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현금	1	200,000,000원	예금 (한미은행 청담동 지점)
합계	1	₩ 200,000,000	

####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평수	평가액	비고
현금	금융기관				200,000,000원	
계					₩ 200,000,000	

“별지 2”

###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 1. 기본재산 총괄표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현금	1	200,000,000	
현금	1	391,020,000	예금 (신안상호저축은행)
현금	1	100,000,000	
합계	3	₩ 691,020,000	

####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수량	소재지	지번	지목	평수	평가액	비고
현금	1	금융기관				200,000,000	
현금	1	금융기관				391,020,000	
현금	1	금융기관				100,000,000	
계						₩ 691,020,000	

“별지 3”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박순석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9-5	4년
이사	이정남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188-29 삼성빌라 라동 211호	4년
이사	이창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6-6 금호APT 나동 707호	2년
이사	최완문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329-29	2년
이사	오국필	서울시 종랑구 북동 173-30	2년
감사	안옥수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251-1 현대APT 101동 201호	2년
감사	장형원	서울시 종랑구 북2동 238-25 동아맨션 나동 203호	2년